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____와 ○○ 노동조합 위원장 ____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조에 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과장급 이상의 기획 및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산기간】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총 근로시간】40시간×해당월의 역일수/7로 계산한다.

제5조【표준근로시간】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시간대】의무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7조【선택시간대】선택시간대는 시작시각대 오전 8시부터 10시, 종료시각대 오후 4시부터 7시로 하되, 시작시각을 1일 전까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상사에게 보고한다.

제8조【가산수당】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상사의 승인을 받고 제4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임금공제】의무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며, 의무시간 시작시간을 지나 출근하거나, 의무시간 종료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조퇴, 지각으로 처리한다.

제10조【유효기간】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 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20 ○○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보상 휴가제 노사합의서(예시)

(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대표(이하 “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보상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보상휴가는 익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단,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보상휴가는 일(日) 단위로 부여하며, 가산수당 외에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분에 대해서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휴가 대신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만약 근로자가 익월에 보상휴가를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이 자유로이 합의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다.

20○○. . .

“갑” 주식회사 ○○○○
서울시 ○○○ ○○○ ○○○
대표이사 ○○○ (인)

“을” 주 소 :
소 속 :
성 명 : (인)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서(예시)

합 의 서

(주)OO예식장(사업주 홍길동)과 (주)OO예식장의 근로자대표 김OO은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본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의해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본 합의서의 내용은 (주)OO예식장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단위기간】본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에서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 이하 중략 -

제7조【유효기간】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합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개정 또는 해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2년간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2000년 0월 00일

(주)OO예식장(사업주 홍길동) (인) 근로자대표 김OO (인)